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2012년 12월

서울 재팬 클럽

목 차

서 문.....	1
요 약.....	3

본 문

1. 노동 분야(4 개 항목).....	14
계속 4 개 항목	
2. 세무 분야(5 개 항목).....	23
신규 3 개 항목, 계속 2 개 항목	
3. 금융 분야(2 개 항목).....	28
계속 2 개 항목	
4. 지적재산권 분야(22 개 항목).....	31
신규 5 개 항목, 계속 17 개 항목	
5. 개별 요망사항(7 개 항목).....	55
신규 6 개 항목, 계속 1 개 항목	
6. 생활환경개선(1 개 항목).....	66
계속 1 개 항목	

합계 41 개 항목 (신규 14 개 항목, 계속 27 개 항목)

서 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 년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비즈니스 측면의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건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저희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개선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 SJC 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제 15 차 건의서를 제출하므로 종전과 같이 검토하신 후 신속한 답변과 개선을 위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2011 년 3 월 11 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일한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기간소재·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한국경제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서플라이 체인 복구 및 복선화(複線化)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올해 일한관계는 중반 무렵 정치적 측면에서 일시 악화되긴 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간의 무역량 확대, 일본기업에 의한 대한직접투자의 급격한 확대 등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를 보완하는 최상의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하여 양국 기업이 공존공영하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한 FTA 의 조기체결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건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일한 FTA 는 일한 간의 산업·기술협력을 가속화 및 고도화시켜 양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유효한 수단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일한관계 전반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전히 협상 재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일중한 FTA 협상 개시가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기운이 고조될 것을 기대합니다.

SJC 는 본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받은 답신 및 개선사항을 회원기업뿐 아니라 이곳 현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일본기업들에게 알리는 것이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에서는 노동·노사, 세무, 금융, 지적재산, 개별안건, 생활관련 등에서 총 41 개 항목(신규 14 건, 계속 27 건)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시에는 SJC 의 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Global Standard)과 일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률·제도 개정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나 혹시 건의내용이 이미 개정된 경우에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노사분야의 4 개 항목은 모두 계속입니다. 이 분야는 많은 일본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결이 어려워 소위 하드코어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동문제가 전진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무분야는 신규 3 개 항목, 계속 2 개 항목입니다.

금융분야는 계속 2 개 항목입니다.

지적재산분야는 가장 많은 22 개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 ‘심판절차의 개선’, ‘전통제품·주류 등의 상표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해결될 항목도 많으나 지적재산 보호를 통한 기업활동 안정화에 도움이 되므로 꾸준히 제도 개정 및 확충을 요망합니다. 개별안건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하여 가격조사 시 종합적 판단 요청 및 자료제출 부담 경감 요망’,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안건이긴 하나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민생활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공통사항이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련분야에서는 교통문제 개선을 요망합니다.

SJC 도 일본기업의 대한직접투자 및 일한무역의 가일층의 발전을 대단히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환경정비 역할을 하는 본 건의사항의 개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2012 년 12 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고바야시 타다시(小林 中)

노동 분야 (계속 4개 항목)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계속 / 내용변경】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자측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의 철폐를 요망한다.

또한 현행 절차 측면에서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철폐 및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을 요망한다.

2) 유급휴가 보상 금지【계속 / 내용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요건이 완화된 점은 평가할만하나 실정을 보면 유급휴가 보상이 기득권화되어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워크 라이프 밸런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상기의 현황을 감안하여 유급휴가의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망한다. 금전보상의 원칙적 금지가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보상면제 조건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의 간소화, 계획부여제도나 반나절 단위의 휴가 사용 촉진 등 구체적인 휴가사용 촉진방안의 적극적인 홍보, 휴가사용 촉진 우수기업 표창 등 구체적인 촉진방안의 실시를 요망한다.

3)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계속 / 내용변경】

작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계류중’이며 ‘노동시장의 상황, 노사 및 관계전문가 간에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현시점의 검토상황과 특히 향후 검토일정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또한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는 파견기간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바 예외직종이나 예외조건의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상용(常用)고용형 파견사업에 관한 현재 검토상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한 공개와 함께 청년층에게 안정된 고용조건과 다양한 취업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를 요망한다.

4)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계속 / 내용변경】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기존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향후 취직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등 유연한 제도운용에 대한 답신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 후를 목표로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 제시해주기 바란다.

또한 ‘경영악화에 따른 1 년간 의무고용 유예’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하면 기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경영상태 확인과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의무고용 유예 연장 등 보다 유연한 운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20 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중언어구사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측면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고용의무 유예 연장뿐 아니라 경영상태에 따라 고용의무의 면제조치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

세무분야 (신규 3 개 항목, 계속 2 개 항목)

5)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청 【신규】

제조업체의 현지법인이 본사에 특정용역(시장조사, 판매지원 및 A/S 등)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취할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영(zero)세율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즉, 제조업체 현지법인의 업종분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혹은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되는데 자세히 조사해보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판매지원서비스업은 외화 획득 산업이므로 문제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율 적용대상을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주의 및 배제방식 채택으로 변경해주기 바란다.

6)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신규】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재고보유대리인(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 조 제 1 항 1 호)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PE 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의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장 규정의 단서로서 ‘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련된 장소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7)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취급에 관하여 【신규】

재화의 수입자가 수출기업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재화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까지 자금부족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영세율의 적용) 규정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추가함으로써 수출기업에 공급되는 재화의 수입 등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수입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혹은 수입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해주기 바란다.

8)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조세감면에 관하여 【계속】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 억원 이상인 일본법인(일본 본사)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회사(한국 자회사, 관련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상기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9) 조직개편에 따른 주식양도 차익의 비과세에 관하여 【계속】

한국 회사에 대해 일본의 모기업이 일본의 조직개편세제를 충족시킨 상황에서 개편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편에 따른 주식양도는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영업권의 양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개편이 부진하다.

조세조약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수정(사업개편에 따른 주식양도는 과세하지 않는 등)해주면 최선이겠으나 조약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환공문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정을 해주기 바란다.

금융분야 (계속 2개 항목)

10)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화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계속】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대부분이 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국외 본지점에서 조달한 것이다. 2011년 8월 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본지점 차입마저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의 대폭적 상승은 외국은행 지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뿐 아니라 대출대상인 일반기업과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쉬워 한국경제나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개선책으로서 1)높은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 2)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의 경감조치, 3)외국은행 지점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 등의 검토를 요망한다.

11)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적용【계속】

지불보증만을 취득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가 행하는 국내조달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외지배주주가 지불보증을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해도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한다.

지적재산 분야 (신규 5개 항목, 계속 17개 항목)

12) 외국어 출원의 용인【계속】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때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어로 출원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활동 및 특허제도의 글로벌화에 따라 여러 국가에 동일한 특허 출원을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제도로는 단기간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또한 번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절차보정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에 의한 특허출원을 허용하는 외국어 특허출원 채택을 요망한다.

13) PCT 에 의한 국제출원 관련 절차보정의 범위【계속】

PCT 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이 한국국내에 진입한 경우 국내진입 시 제출한 번역문에 근거한 보정만 인정되고 있고 국제출원 원문에 근거한 절차보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예를 들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올바른 보정을 할 수가 없어 권리취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PCT 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의 국내진입 시 국제특허 출원 원문에 근거한 절차보정을 인정하도록 보정범위의 확대를 요망한다.

14) 지정기간, 불복신청기간 연장【계속】

주요 각국에서는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응답기간이 대략 3~4개월인데 한국에서는 2 개월이라 이것을 연장하기 위한 대리인수수료 등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4 개월로 해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30 일간을 더욱

연장해줄 것을 요망한다.

15)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행 제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예를 들면 DVD 나 CD-ROM 등)에 기록된 것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의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을 유통·판매하는 것이 일반화 된 요즘 네트워크 상의 유통·판매는 기록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직접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보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

16)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

특허결정 후 사업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출원을 분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강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 등에게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결정 후에는 더 이상 분할출원을 할 기회가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허결정 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를 요망한다.

17)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계속】

현행제도의 운용에 따르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함에 있어 다른 청구항을 다수 인용한 청구항을 재차 다수인용하는 기재(이른바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다면적인 특허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과 같이 멀티의 멀티클레임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용인하도록 요망한다.

18) 특허기간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 가산 【신규】

신약 판매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과 관련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기간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승인된 임상시험기간 등에 국한되어 있고 해외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의 산입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임상시험기간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초로 산입할 것을 요망한다.

19)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 완화 【계속】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공고 후 3 개월 경과 이전까지이며 등록공고 후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 이외에는 더 이상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이 결여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 적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해당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쟁점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쟁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결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무효화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할 것을 요망한다.

20) 심판절차의 개선 【신규】

한국의 무효심판 등에서는 실무상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관의 빈번한 인사이드가 있을 때마다 해당 ‘기술설명회’의 요청이 있어 특히 외국 출원인에게는 그 대응이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심판관의 인사이드를 가급적 줄이도록 요망함과 함께 이미 시행한 ‘기술설명회’의 개최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인사이드가 있을 때마다 ‘기술설명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요망한다. 또한 이런 절차를 개최할 때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일정조정을 충분히 해주기 바란다.

21)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 판단 【계속】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의 유효,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침해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고, 특허가 무효화 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조기에 그리고 일회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망한다.

22)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 등을 양도하는 행위 등은 이른바 간접침해로서 권리침해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현행 특허법에서는 간접침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된 부품이나 재료 등을 양도한 행위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부품이나 재료 등이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된 물품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간접침해의 적용이 어려워 특허권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악의(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를 가지고 특허권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간접침해로 간주하도록 요망한다.

2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 【신규】

한국에서의 지적재산침해 소송은 권리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고 또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지극히 소액이며 실제 라이선스피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화되는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권리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라이선스피를 지불하는 것보다 권리침해 소송에서 다투는 편이 이득이라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어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환경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인정을 적정화하고 심사·심판·권리행사에 이르기까지 하자 없는 강한 권리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심판·법원의 특허성 판단기준을 통일해 줄 것을 요망한다.

24) 디자인 등록 요건에 있어 확대 선출원의 개선 【계속】

한국에서는 물품 전체의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해당물품의 일부분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동일 출원인이라도 나중에 출원한 물품의 일부분이나 부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한편, 최근 들어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에 대해 디자인성이 높은 부분만 모방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일부분이나 부품에 대해서도 권리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동일 출원인에 의한 이와 같은 일부분·부품의 후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원한 디자인의 일부분·부품을 후출원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망한다.

25)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범위에 관하여 【계속】

2010 년에 입법예고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에 관계없이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확대시킬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물품을 초월하여 확대됨으로써 권리범위가 터무니없이 확대되므로 산업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요망한다.

26) 디자인 무심사 등록 물품의 재검토 【계속】

앞서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부여를 하고자 무심사로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무심사 등록 대상이 분류에 따라 경직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프린터 등 유행성이 강하지 않은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재검토함과 함께 단순히 분류 등에 따라 경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물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 특성을 감

안한 후 대상을 결정하도록 요망한다.

27) 상표 선출원에 관한 판단 시기 개선 【계속】

타인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 A 를 받은 경우 그 후에 출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B 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등록상표 A 와 상표 B 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을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상표 B 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상표 B 심사 시에 등록상표 A 가 소멸되어 있더라도 상표 B 출원 시에 존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등록상표 A 에 의해 상표 B 가 거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선출원한 등록상표와 그 후에 출원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후에 출원된 상표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요망한다.

28)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확대 【계속】

예를 들어 프린터와 프린터 카트리지처럼 본체 상품과 그 부속품에 대해 같은 상표를 부착하여 포괄적 보호를 받는 것은 권리의 충분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기재가 일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기재가 인정되는 범위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으로 본체상품과 그 부속품 하는 식으로 포괄적 기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29)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신규】

국외에서 타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해당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나 창작성 있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번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2(후) 672 호, 2012년 6월 28일 판결선고)에서는 부정한 목적 유무에 대해 국외기업 상표에 대한 한국내 인지도 등을 가미시켜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외에서 특정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한국 국내에 알려져 있는 것이 요건이 되어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의 모방상표를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에도 현행의 한국 특허청 상표심사 지침서에 따른 운용 대로 국외에서 타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나 창작성이 있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등을 하도록 요망한다.

30) 전통제품·주류 등의 상표보호 강화 【신규】

지난 번에 니혼슈(일본 사케)의 일반명칭(아마구치(甘口), 가라구치(辛口), 죠센(上撰), 도쿠센(特撰) 등)이 한국에서 상표등록 되어 니혼슈 수입업자가 이들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침해를 경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은 일본 사케 업계 종사자라면 일한을 막론하고 거의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제품, 주류 등에 관해 해당업계의 종사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도록 심사체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망한다.

31) 특허청 웹사이트(KIPRIS)의 개선 【계속】

한국 특허청 웹사이트(KIPRIS)는 일부 의장 및 상표 공보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한 영문검색을 한글로 자동번역하는 기능(Eng-Kor)이 있어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의장 및 상표 공보에 대한 영문 번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실적으로 Eng-Kor 기능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어검색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글로 된 공보에 대한 영문번역 확충 및 Eng-Kor 기능확충을 요망한다.

32) 국경조치의 확대 【계속】

최근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의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내로 유입된 것이며 또한 중국 등에서 제조 발송된 모조품이 한국에서 환적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세관에 의한 단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품과 모조품의 판별방법을 단속 직원에게 교육하여 주지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나 해당교육은 한국 국민을 모조품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공익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회비를 지불한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3년 7월 이후 단속이 시작될 예정인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체제 준비를 요망함과 함께 수출 및 통과 시의 단속도 강화해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이와 함께 세관직원 등에 대한 모조품 판정교육 등의 기회를 각 기업에게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요망한다.

33)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철폐 【계속】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상파 방송에서 일본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프로그램 포맷을 포함하여 일본 콘텐츠에 대한 모방피해가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전근대적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주기 바란다.

개별요망사항 (신규 6 개 항목, 계속 1 개 항목)

34) 상법 개정 【신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기업과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승인, 공정거래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출 등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데 포괄적 절차의 도입 등, 대상거래의 명문화 등 간소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35)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하여 가격조사 시 종합적 판단 요청 및 자료제출 부담 경감 요망 【신규】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하게 되는데 조달청은 계약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계약자의 계약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조달청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가격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금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거래의 계속성, 빈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관련서류를 요청하고 조달청에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조달청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국세청에 직접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36) 식품수입에 관한 규제 및 절차 간소화 요망 【신규】

소·치킨 엑기스(엑기스)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소 엑기스를 사용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치킨 엑기스의 경우 높은 고열에서의 장시간 멸균이 요구되는데 일본의 기준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 한국내 제조품이 동 기준에 의거해서 제조되고 있는 지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입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소·치킨 엑기스 함유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통관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37) 신약가치 방안에 대한 건의 【신규】

신약가치는 기업경영, 신약개발, 시장에 대한 제품도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신약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불투명함과 복잡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불어 개발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망한다.

38)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계속】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저가인센티브제도,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재조정제도 등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상 해결해야 할 모순점이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

39) 1. 신약 약가 및 보험급여 등재 절차 단축화 【계속】

2.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 【신규】

1. 신약 약가신청으로부터 등재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다가 대체품의 가중평균 이하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한 급여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제품의 시판 여부 결정을 할 수 없어 제조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미래 예측 불가능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상 리스크가 높으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2. 지금까지 다양한 신청 및 등재 후에 관련된 약가제도가 도입되어 왔는데 도입 배경, 시대, 검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는 제도도 있으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 국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40)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필수 제출자료인 품목별 제조 및 품질평가자료(GMP 자료) 중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관한 건의사항 【신규】

GMP 밸리데이션 관련법규 중 ‘절차 밸리데이션’, ‘세정 밸리데이션’과 관련하여 효율면·환경면에서 나쁜 영향이 나올 항목이 있으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생활환경개선 (계속 1개 항목)

41) 교통문제 관련 개선 【계속】

오토바이의 보도주행, 자동차의 신호무시, 버스의 급발진 및 급정차 등의 단속강화 및 정부의 교통도덕 향상을 위한 지도를 요망한다. 또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해주기 바란다.

건의사항(본문)

1. 노동·노사 관련 분야

건 명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p> <p>본 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견제할 목적으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명문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그러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합의 동의의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자측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p> <p>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나 동 장관의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 관련 심사를 할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불이익의 경우는 동의)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명백히 종업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면에서도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p> <p>또한 2011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취업규칙의 해석 및 운영방침’(2009.4.24)을 공개해주었는데 실제로는 판례와 사건이 합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판례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p> <p>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제기준(Global Standard) 상으로도 삭제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절차면에서도 일본처럼 굳이 기득권익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 3자 즉, 사법기관(법원-귀 노동위원회)에게 판단을 위임하여 기업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p>

	신속하게 대응하고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개선요망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하 2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①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규칙작성, 변경절차)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의 동의의무’ 철폐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②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면의 개정, 즉 a.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근로감독관의 심사)의무의 철폐, b.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
비 고	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에 협상하는 것이 통례적이지만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제 90 조).

건 명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 요건으로서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가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개정된 점은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시간적 유예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정을 보면 유급휴가 보상이 기득권화하여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p> <p>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올 여름에 휴가사용을 예정한 사람은 작년보다 줄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1 위는 ‘추가수입이 필요해서’가 40.5%로 유급휴가 보상으로 인해 유급휴가 사용이 부진한 실태가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0 년 시점에서 2,193 시간으로 OECD 평균 1,714 시간보다 444 시간이나 많아(출처: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워크 라이프 밸런스) 개선은 부진하다. 또한 보상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업간의 격차 또는 비정규직 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p> <p>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보상금지 법제화 등에 의한 구체적인 시책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p>
개선요망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아래 3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망한다.</p> <p>① 유급휴가의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p> <p>② 금전보상의 원칙적 금지가 어렵다면 그 전 단계로서 이하의 시책을 실시한다.</p> <p>1)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서 정한 유급휴가 금전보상의무 면제조건이 되는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를 간소화한다.</p> <p>2)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한다.</p> <p>계획부여제도나 휴가의 반나절단위 사용촉진 등 구체적인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업계 단체를 통해서도 촉구한다.</p> <p>3)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 상호가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휴가사용 촉진목표를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그 달성상황을 확인하여 우수기업</p>

	을 표창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1 조, 5 조, 61 조, 94 조 1 항
비 고	일본의 경우, 행정해석(1955년 11월 30일 기수 4718호)에서 ‘법정 일수 이내의 유급휴가 금전보상’은 위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계획연차휴가제도’(노동기준법 39조 5항)을 제정하였으며, ‘8월중 5일간 하기휴가를 계획연차휴가’로 하는 등 종업원 개인의 시계지정권이나 시계변경권을 배제하고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 명	3.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계속/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09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에 큰 변화는 없다. (2010년 35%, 2011년 34%, 2012년 33%)</p> <p>그렇다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2 가지 점이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p> <p>① 극진한 정규직 보호</p> <p>경제의 글로벌화, IT 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을 걸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제는 정규직에 대해 극진한 보호를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업이 유연한 체제를 기동적으로 구축하고자 할 때 병목현상의 하나가 되고 있다. 물론 근로조건을 쉽사리 낮추는 것은 근로의욕 저하 및 유능한 근로자의 정착을 저하 등으로 이어져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 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채용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더욱 강화하면 정규직이 증가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노무비용에는 한계가 있어 현행 법체제를 재검토하지 않는 한 일시적 효과에 머무를 것이며 기업에 따라서는 한국내 사업규모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p> <p>② 비정규직의 짧은 사용기간</p> <p>한국사회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이미지(사회적 위상·임금)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나 작업에만 종사하고 있어 시장가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p> <p>2년간이라는 짧은 고용기간으로는 안타깝지만 기업은 업무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사원에게는 고도의 업무가 아닌 정형적인 단순업무를 맡길 수 밖에 없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은 항상</p>

	<p>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아래 근로자는 경력개발을 도모할 수 없고 노동시장에서 시장가치는 오르지 않아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경기가 악화되면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차별대우의 시정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시장가치가 오르는지 고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p>
<p>개선요망</p>	<p>귀 정부의 생각처럼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극진한 정규직 보호가 다소나마 재고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정규직 비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보호의 재검토를 강하게 부탁 드린다. 그러나 노동법 체계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또한 관계자(노동계, 정계, 관료계) 의견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하 2 가지 점의 조기 실현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① 비정규직 사용기간</p> <p>1/ 작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을 2 년에서 최장 4 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계류중’이며 ‘노동시장의 상황, 노사 및 관계전문가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현시점의 검토상황과 특히 향후 검토일정에 대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p> <p>2/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보호법 제 4 조 제 1 항) 일률적으로 2 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26 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다. 예외종이나 예외조건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② 상용(常用)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p> <p>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귀 정부가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는 파견기업의 정규직으로서 한국사회, 근로자, 사용자 등 3 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로 생각한다. 작년에 귀 정부로부터 법제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현재 검토상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 공개해주시기 바란다.</p> <p>2/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p>

	<p>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고용의 미스매칭이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청년층은 일(work)을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 사업은 청년층에게 안정된 고용조건과 다양한 취업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년층에게는 미지의 업무를 경험해보거나 경력 계발을 도모할 수 있어 취업대상 선택의 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회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회가 늘어난다.</p> <p>청년층의 실업률 개선 방안의 하나로 당 사업의 법제도화를 검토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건 명</p>	<p>4.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내용 변경】</p>
<p>현황/문제점</p>	<p>국가유공자 고용의무는 헌법 제 32 조 제 6 항에 근거한 특별제도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있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고용의무 유예가 부여됨).</p> <p>이에 관한 기존 건의와 답신에 입각하여 2011년 건의에 대한 귀 정부의 답신은 2009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42.9%(2011/2012)로 고용이행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이 힘들 경우 1년간 의무고용 유예 등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 아울러 향후 취직능력개발을 활성화함과 함께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 고용 후 보상은 예산을 통해 총당할 것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취직지원제도의 취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접근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의 인식을 요한다는 답신도 받았다.</p> <p>유공자 취직지원제도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사원 개인을 활용하고 그의 자기실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그 대가를 받아 활동하는 기업이 사원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있어 필요조건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논리가 엄연히 존재한다.</p> <p>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자원의 원천인 인재를 한 사람도 낭비할 수 없다. 필요로 하는 인재와 추천을 받고 지원하는 인재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원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를 일부러 만들거나 고용 후 교육 등의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 아니다. 특히 2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에게 그 부담은 크다.</p> <p>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원활한 고용이행을 위해 고용이행업자측의 입장에서 제도 운영상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 부탁 드리며 고용이행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인 귀 정부가 향후 고용이행 촉진을 어떻게 실행할 예정인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해주기 바란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하 3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해주기 바란다.</p> <p>① 취직능력개발의 활성화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년 후를 목표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고용 후 보상예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사려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각 기관들과 협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또한 그 과제들을 언제까지 검토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p> <p>② 고용이행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이 힘들 때 1 년간 의무고용을 유예하는 등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기한이 되면 기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경영상태를 확인하거나 구인기업과 지원자의 미스매칭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의무고용 유예 연장 등을 인정해주는 등 보다 유연성 있는 운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③ 또한 ②에 기재한 더욱 유연한 대응을 검토할 때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20 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중언어구자사 고용의 필요성 등 고용측면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고용의무 유예의 연장뿐 아니라 경영상태에 따라서는 고용의무 면제조치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국가보훈처</p> <p><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장 취업보호(제 28 조 내지 39 조)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p>

2. 세무 분야

<p>건 명</p>	<p>5. 영세율 적용대상인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 【신규】</p>
<p>현황/문제점</p>	<p>현행 법률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그 업종을 열거하는 한편, 그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p> <p>제조업체의 현지법인이 본사에 특정용역(시장조사, 판매지원 및 A/S 등)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을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다. 즉, 제조업체 현지법인의 업종분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혹은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되는데 자세히 조사해보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p> <p>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세내용을 보면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업무(판매지원: 시장조사, 연락업무, 상품중개 등)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는 제조업체의 현지법인이므로 상품종합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당사는 외화획득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해당되는 업종을 찾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p>
<p>개선요망</p>	<p>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 의 소비지 개념을 준용하면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소비지(용역의 산출물이 귀속 및 사용되는 곳)가 국외라면 용역수출의 성격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선진적인 조세제도라고 판단된다.</p> <p>상기와 같은 판매지원서비스업은 외화를 획득하는 산업이므로 문제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율 적용대상의 기타 외화획득 용역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해주시기 바란다.</p> <p>1.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및 배제방식 채택(2001.12.31 대통령령 제 17460 호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방식).</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	-----------------------------------

건 명	6.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취급에 관하여 【신규】
현황/문제점	<p>한국에 거점을 설치하지 않고 한국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 생산 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한국내에서 판매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p> <p>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법 제 94 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 94 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범위는 각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PE: Permanent Establishment)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PE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94 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반 의무를 지게 된다.</p> <p>즉,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생산 된 재화를 해외에 반출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재고보유대리인(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 조 제 1 항 1 호)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PE 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p>
개선요망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의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장 규정의 단서로서 ‘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련된 장소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

<p>건 명</p>	<p>7.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신규】</p>
<p>현황/문제점</p>	<p>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일정요건(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수입 시에는 수입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관장은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p> <p>예를 들면 재화 수입자가 수출기업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재화공급 시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까지 자금부족이 발생한다.</p> <p>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징수부서(세관)와 환급부서(세무서)가 달라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른 환급 지연이 종종 발생하며 수입기업의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p>
<p>개선요망</p>	<p>부가가치세법 제 11 조(영세율 적용) 규정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추가하여 수출기업에 공급되는 재화의 수입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입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혹은 수입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건 명	8.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황</p> <p>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5,000 억원 이상인 일본법인(일본 본사)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회사(한국 자회사, 관련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 년 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p> <p>2. 문제점</p> <p>1) 실질적 독립성을 도입한 배경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품소재기술 향상을 위해 투자한 일본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력 있는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가 침체되고 있다.</p>
개선요망	1)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상기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건 명</p>	<p>9. 한일 조세조약에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양도 유사소득 과세에 관하여 【계속】 (외국 본사의 합병·분할 시, 국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제외)</p>
<p>현황/문제점</p>	<p>한일 조세조약은 주식양도 과세에 관하여 제 13 조 2 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사업양도 유사과세’로서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말하자면 일본 내에서 한국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영업권 양도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p> <p>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제는 한쪽 국가에서 세제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 국가에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p> <p>그러나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상기 사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p> <p>(문제점)</p> <p>한국의 회사에 대해 일본의 모기업이 일본 조직개편세제를 충족시킨 후에 개편할 경우 사업개편에 따른 주식양도는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에서 영업권의 양도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직개편이 지지부진하다.</p>
<p>개선요망</p>	<p>조세조약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수정(사업재편에 따른 주식양도는 과세하지 않는 등)해주면 최선이겠으나 조약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환공문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정을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3. 금융 분야

건 명	10.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화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에 관하여 【계속】
현황/문제점	<p>2011년 8월 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에 따르면 동일 이후 각 은행은 외화부채의 하루평균잔액에 대해 이하의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며, 매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통지되는 금액을 동 5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미달러화로 납부하도록 되었다(3월 결산인 일본은행들은 2012년 8월말이 첫회 납부기한).</p> <p>-부과요율:1년 이하:20bp, 1~3년:10bp, 3~5년:5bp, 5년 이상:2bp</p> <p>외국은행 지점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p> <p>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그 대부분이 국외 본지점에서 조달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지점 차입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과는 달리 유동성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정적 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까지도 대상에 포함한 부담금 부과는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 <p>부담금에 따른 조달비용의 상승분은 결과적으로 대출대상인 일반 기업과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쉬워 한국경제나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외에도 2007년 8월 이후 외화대출 및 외화발행채권 투자에 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외국은행 지점들의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내 기업의 원활한 외화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p>
개선요망	<p>향후에도 외국은행 지점들이 이곳 현지 산업계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p> <p>급격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p>

	<p>때 안정적 자금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의 경감조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p> <p>외국은행 지점들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은행(외화건전성부담금 관련기관)</p> <p><관련법령> 외환거래법 제 11 조 2,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 21 조 2~21 조 10</p>
<p>비 고</p>	<p>일본에는 이와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p>

<p>건 명</p>	<p>11.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적용 【계속】</p>
<p>현황/문제점</p>	<p>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및 동 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등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을 할 수가 없다.</p> <p>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지급이자 및 할인료 지불이 국외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된 것이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의 국내조달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매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p>
<p>개선요망</p>	<p>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실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장 제 14 조</p>
<p>비 고</p>	<p><일본의 사례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으로 일본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9 조 13)</p>

4. 지적재산권 분야

건 명	12. 외국어 출원의 용인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재 한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은 한국어로 출원해야만 한다.</p> <p>2.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원할 경우 ①파리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번역문을 작성한 후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출원인에게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②특허출원 내용은 고도로 기술적이기 때문에 원문의 정확한 의도를 번역문에 충분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또한 오역 등이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원문으로 출원하고 그 기재내용에 근거한 보정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 출원인의 발명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개선요망	<p>1. 지난번 특허법 입법개정 예고안에는 외국어를 원본으로 출원할 수 있는 외국어출원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 드리며 아울러 해당 개정안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요망한다.</p> <p>2. 또한 지난번 특허법 개정 입법 예고안은 우선 영어로 된 외국어 출원을 허용하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는데, 외국 특허출원인 중 일본기업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여 일본어에 의한 외국어출원을 조기에 허용해주도록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이미 외국어출원제도를 도입(일본 특허법 36 조의 2) 하고 있는 것 외에 미국 37CFR1.52(d), 대만 특허법 25 조, 태국 특허법에 근거한 성령 제 21 호 12 조 2 항, 인도네시아 특허법 30 조 2 항 등 외국어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있다.</p>

건 명	13. PCT 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관련 절차보정의 범위 【계속】
현황/문제점	<p>1. PCT 에 의해 국제특허 출원을 하고 한국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진입 시 제출한 번역문에 근거하여 절차보정을 할 수 있는데(한국 특허법 208 조),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PCT 국제특허출원 원문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절차를 보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2. 그러나 특허출원 내용은 기술적으로도 고도의 내용이라 원문의 정확한 의도를 번역문에 충분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또한 오역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보정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은 PCT 출원인에게 가혹한 것이며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개선요망	<p>1. 지난번 특허법 입법개정 예고안에 다른 주요국가들처럼 PCT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원문 기재내용에 근거한 절차보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점 감사 드리며 아울러 해당 개정안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p>1. 일본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원문 기재내용에 근거한 절차보정을 인정하고 있다(일본 특허법 184 조의 12 제 2 항).</p> <p>2.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 출원인이 한국어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이 일본에 국내진입 하는 경우 한국어 원문 기재내용에 근거한 절차보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p> <p>3.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다.</p>

건 명	14. 지정기간, 불복신청기간 연장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의견서제출 통지(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은 통상 2 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다.</p> <p>2. 그러나 거절이유에 인용된 한국어 문헌에 대해 외국 출원인은 번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정기간 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p> <p>3. 또한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재심사 등 불복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 일간(기간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30 일간 추가)으로 되어 있어 역시 대응하기가 어렵다.</p> <p>4. 이들에 대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일단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장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대리인수수료가 소요된다.</p>
개선요망	<p>1.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을 다른 주요국가들처럼 3~4 개월간으로 해주고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 기간도 마찬가지로 연장해주기 바란다.</p> <p>2. 또한 지정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지정기간연장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특허법 등
비 고	<p>1. 일본에서는 외국 출원인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이 3 개월로 되어 있으며(일본방식 심사편람 04.10, 신청에 의해 추가적으로 3 개월 연장 가능), 그밖에 미국 3 개월, EPO 4 개월, 중국 4 개월, 대만 3 개월로 되어 있는 등 주요국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3~4 개월로 되어 있다.</p> <p>2. 또한 이들 국가에서 특별히 심사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p>

건 명	15.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와 관련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특허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p> <p>2. 그러나 인터넷 등의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유통·판매 등이 일반화된 요즘 네트워크 상에서의 유통·판매는 기록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침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도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p>
개선요망	1.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물품으로서 직접보호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입법화 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특허법
비 고	<p>1. 일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품으로 정의(일본 특허법 제 2조 제 3항)하고 그 자체를 직접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p> <p>2. 또한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2008년 2월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p>

건 명	16.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행제도에서는 특허청구 범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해 출원을 분할하여 더욱 정확한 특허청구 범위내의 권리화를 지향하는 길이 닫혀있어 실효성이 있는 다면적이고 망라적인 권리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p> <p>2. 즉, 실효성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허청구 범위에 다면적이고 망라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으나, 심사관에 의한 심사와 여기에 부수적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넓게 권리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출원인 스스로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특허사정 시의 특허청구 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특허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p>
개선요망	1. 특허사정 후 일정기간에도 분할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특허법 등
비 고	<p>1. 일본에서는 특허 사정 후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일본 특허법 제 44 조 제 1 항)하며, 출원인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 <p>2. 또한 특허 사정 후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3 자에 의한 특별한 감시부담도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가 이루어진 후의 분할이므로 어느 정도 특허 사정의 예견성이 있어 그 남용도 방지되고 있다.</p>

건 명	17.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재 한국에서는 다중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거듭 다중인용한 종속항(소위 멀티의 멀티클레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2. 따라서 발명의 다면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아래의 예와 같은 이른바 멀티의 멀티클레임 표현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p> <p><멀티의 멀티클레임 사례></p> <p>청구항 1 A를 가진 장치</p> <p>청구항 2 게다가 B를 가진 청구항 1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3 게다가 C를 가진 청구항 1 또는 2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4 게다가 D를 가진 청구항 1~3 중 하나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5 게다가 E를 가진 청구항 1~4 중 하나에 기재된 장치</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p> <p>특허법 등</p>
비 고	<p>1. 일본 및 EPO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청구에 의한 표현이 인정된다.</p> <p>2. 또한 멀티의 멀티클레임을 인정할 경우 심사부담이 증대됨과 동시에 청구 수(청구항 수)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비용 계산이 번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및 EPO에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p>

건 명	18. 특허기간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 가산 【신규】
현황/문제점	<p>1. 신약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해당 연장기간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승인된 임상시험 기간과 신약승인신청 심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해외에서의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이 해당 연장기간 산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 고시 제 2005-13 호)</p> <p>2. 그러나 해외에서의 임상시험도 한국에서의 신약승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인데 이것이 연장기간 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본래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의 존속 연장기간이 단축되었다.</p>
개선요망	<p>1. 신약의 허가 절차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신약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임상시험 기간도 그 산정에 가산해 주기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 특허청 고시</p>
비 고	<p>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해외에서의 임상시험 기간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초로서 산입된다.</p>

건 명	19. 무효심판의 청구권 적격 제한에 대하여 【계속】
현황/문제점	<p>1. 특허권 등은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이며, 그 권리범위가 여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로 인해 본래 무효화되어야 할 특허권 등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2. 그러나 한국의 무효심판제도는 등록 고시로부터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만 청구인 적격이 있으며,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 공고 후 3 개월 경과 이전까지로 한정(한국 특허법 133 조 1 항)된다.</p> <p>3. 또한 무효심판 청구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쟁점이 되기도 하며 불필요한 쟁점이 야기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신규성 결여 및 진보성 결여 등 공익적 이유에서 하자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 등</p>
비 고	<p>1. 일본에서는 공익적 이유에 의한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에 제한이 없으며(일본 특허법 123 조), 기타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도 특허등록 후 제 3 자가 특허 무효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p> <p>2.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을 철폐한 데다 주로 무효심판을 구두심리로 진행함으로써 우려되는 무효심판 남용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p>

건 명	20. 심판 절차의 개선 【신규】
현황/문제점	<p>1. 한국의 무효심판 등에서는 실무상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 진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2. 그러나 심판합의체의 인사 이동이 빈번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기술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특히 외국인 출원인에게는 그 대응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심리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사건 계속중인 심판합의체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가급적 줄여주기 바란다.</p> <p>2. 심판합의체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기술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지 말고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실시한 설명내용을 심판합의체 내에서 공유해주기 바란다.</p> <p>3. 또한 이러한 절차를 개최할 때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스케줄을 조정할 후 기일의 결정 등을 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특허청심판원</p>
비 고	<p>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직책이란 관점에서 수년간은 같은 임무를 담당</p>

건 명	21. 침해 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 판단 【계속】
현황/문제점	<p>침해 소송에서 특허 등의 유효/무효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특허심판원에 의한 무효 심판 확정을 기다려야 하며 침해 소송의 조기 해결 및 일회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금번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무효심결 확정 이전이라도 그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화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따른 권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해 심리 및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 다 95390, 2012년 1월 19일 판결선고)을 했다.</p> <p>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를 존중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법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침해 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특허 등의 유효·무효 판단(무효 항변)을 제도화해 주기를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 등</p>
비 고	<p>일본에서는 특허법 104 조 3 에 의거하여 침해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권리 행사 불가능이 입법화되어 있으며 침해소송에서 무효 항변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p>

건 명	22.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의 특허법 등은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예비적 행위 등을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부품이나 재료에 대해 해당 특허발명 관련 물품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p> <p>2. 그리고 침해 소송 등에서 해당 ‘에만’에 관한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고 있으므로 간접 침해의 적용이 어려워 특허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악의(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를 갖고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까지 간접침해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 등</p>
비 고	<p>1. 일본에서는 특허법 101 조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일본 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제외한다)이며 그 발명에 의한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대하여 그 발명이 특허 발명이라는 점 및 그 물품이 그 발명 실시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직업적으로 그 생산·양도 등 혹은 수입·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악의를 갖고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등을 특허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p> <p>2. 기타, 독일 특허법 10 조, 미국 특허법 271 조(c) 등이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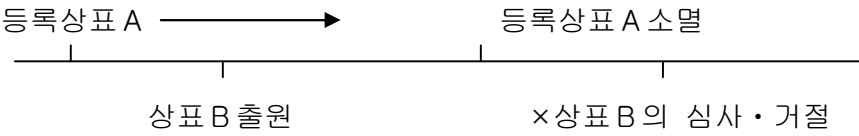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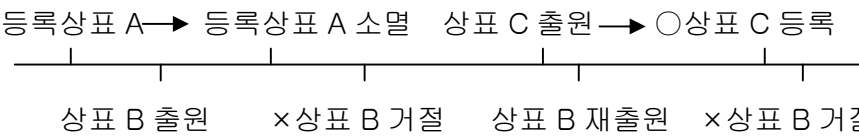
건 명	2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 【신규】
현황/문제점	<p>1. 한국 특허법 등은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꾀하고 있다.</p> <p>2.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또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극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제 라이선스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무효 심판에서 권리가 무효화되는 비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상황이다.</p> <p>3. 때문에 권리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라이선스피를 지불하는 것보다 권리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편이 득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환경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p>
개선요망	<p>1. 손해배상액 인정 적정화와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2. 권리자 승소율 제고 및 무효심판을 통한 무효화율 저하를 위해 심사, 심판, 권리행사에 이르기까지 하자 없고 예견성 있는 강한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심판, 법원에서의 특허성 등의 판단기준을 통일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특허법 등</p>
비 고	<p>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같은 권리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판결을 참고하자면 한국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애플측 약 4000 만원, 삼성전자측 약 2500 만원이었는데 미국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는 삼성전자측 약 10 억 5000 만달러(약 1 조 1550 억원)이 나왔다.</p>

건 명	24. 디자인 등록 요건에 있어 확대 선출원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그 일부분이나 부품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거절되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3 항)</p> <p>2. 따라서 먼저 제품전체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이나 부품을 순차적으로 디자인 개발하는 디자인개발의 실태에 맞추어 개발한 디자인을 각각 순차적으로 출원할 경우 동일 출원인이라 하더라도 거절된다.</p> <p>3. 최근들어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독자성, 디자인성이 높은 부분만을 모방한 모조품 피해가 빈발하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품의 일부분이나 부품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들이 심사에서 거절되어 디자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지난 번 디자인보호법(디자인법) 입법개정 예고안에서 동일 출원인에 의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앞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그 일부분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부품 디자인을 나중에 출원한 경우,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이 점에 감사함과 동시에 이것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p>
비 고	<p>1. 일본에서는 2007년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동일출원인에 의한 후출원의 부분의장, 부품의장에 대해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의한 거절사유에서 제외되고 있다(일본국의장법 제 3 조 2).</p>

건 명	25.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범위에 관하여 【계속】
현황/문제점	<p>1. 2010년 입법 예고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 제 43조 제 2항이 신설되어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에 관계없이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다.</p> <p>2. 그러나, 보호 대상을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확대시킬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물품을 초월하여 확대됨으로써 권리 범위가 터무니없이 확대되어 오히려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p>
개선요망	1. 앞서 입법 예고된 디자인보호법(디자인법)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입법 예고된 해당 제 43 조 제 2 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디자인 콘셉트 자체로 보호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기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비 고	일본에서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원서에 기재된 사항, 도면 등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일본국의장법 제 24 조).

건 명	26. 디자인 무심사 등록 물품의 재검토 【계속】
현황/문제점	<p>1.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 물품으로써 아래 물품들이 추가되었다.</p> <p>2. 디자인 무심사 등록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일부 실제심사요건을 생략하고 조기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앞서 추가된 H5(전자계산기 등)의 H5-450(컴퓨터용 데이터 출력기)인 ‘프린터’ 등은 유행성이 강한 물품이 아니며 그 라이프 사이클은 오히려 통상 물품보다 길다. 마찬가지로 F5(광고용품, 표시용구 및 상품 진열용구)인 F5-210 ‘상품진열용구’ 등도 유행성이 강한 물품이라 할 수 없다.</p> <p>3. 이와 같이 오히려 라이프 사이클이 긴 물품들이 디자인 무심사 등록의 대상으로 다수 추가되어 이들 물품에 대한 권리가 불안정해 지고 있으며 권리 활용, 침해 회피 등의 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p> <p>< 추가된 물품의 분류 ></p> <p>B3 일용품 B4 가방 및 휴대용 지갑 등 B9 의류 및 신변잡화 ; 범용부품 및 부속품 C4 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7 경조용품 D1 실내용 소형 정리용품 F5 광고용품, 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 H5 전자계산기 등</p>
개선요망	<p>1. 디자인 무심사 등록의 대상 물품에 대해 단순히 상위 분류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물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의 특성을 숙고한 후에 대상을 정해 주기 바란다.</p> <p>2. 또한 심사효율 등의 요구로 인해 디자인 무심사 등록 결정을 분류를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더욱 하위 소분류의 구분 단위로 결정하는 등 가능한 한 물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의 특성에 합치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p> <p>3. 이번 디자인보호법(디자인법) 입법개정안 중에서 디자인 무심사</p>

	<p>등록을 로카르노 분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술한 문제에 비추어 보아 경직된 대상물품 결정은 피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p>
<p>비 고</p>	<p>일본은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p>

<p>건 명</p>	<p>27. 상표의 선출원에 관한 판단 시기 개선 【계속】</p>
<p>현황/문제점</p>	<p>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후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거절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판단 시기를 해당 후출원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상표법 제 7 조 1 항 7 호, 동조 3 항).</p> <p>2. 따라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A 가 존재하는 시기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B 를 출원한 경우, 선등록상표 A 가 상표 B 의 심사계속중에 소멸하더라도 상표 B 의 출원시점에서 등록상표 A 가 존재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등록상표 A 가 무효 심판으로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표 B 는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p>  <p>3. 이와 같은 제도이므로 상표 B 출원에 대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등록 A 의 소멸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p> <p>4. 게다가 상표 B 의 출원인이 등록상표 A 의 소멸 후 다시 상표 B 를 출원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를 상표 C 로서 출원한 경우, 본래 상표 B 출원인이 선출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게 되므로 이는 선출원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문제가 크다.</p> 
<p>개선요망</p>	<p>1. 이번 입법개정 예고에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선등록상표가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 등의 일정 요건 하에서 해당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판단을 출원의 가부를 결정할 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시되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아 감사함과 동시에 해당 개선이</p>

	<p>조기에 실현되기를 요망한다.</p> <p>2. 이와 동시에 선등록상표와 후출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판단을 출원의 가부 결정시에 하도록 다시 한번 요망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상표법</p>
<p>비 고</p>	<p>일본을 비롯해 유럽 및 미국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이와 같은 유사여부 판단시기는 출원시가 아니라 출원의 가부 결정 시이다.</p>

건 명	28.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확대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표현이 일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예) (이전)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서멀 프린터 (현재) 프린터</p> <p>2. 또한 ‘전자복사기 및 그 부속품(G3908)’ 등, 일부 지정상품의 포괄표시도 인정되고 있다.</p> <p>3.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 기재가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체와 그 부속품처럼 동일상표의 사용 니즈가 특히 높은 상품일지라도 해당 부속품에 해당되는 상품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특정해야 하며, 또한 나중에 새로운 부속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요구할 경우 그 때마다 새로이 출원해야 해서 충분한 상표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개선요망	1. ‘본체상품 및 그 부속품’과 같은 기재를 포함하여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를 허용하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비 고	일본에서는 ‘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자동차를 비롯하여 그 부품 및 부속품’ 등의 기재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건 명	29.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신규】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써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표법 7 조 1 항 12 호)</p> <p>2. 그리고 한국 특허청의 상표심사 지침서(심사기준)에 의하면 부정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1)타인의 상품 등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더라도 그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킬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나, 2) 창작성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지극히 유사한 모방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을 꼽고 있다.</p> <p>3. 이에 대해 지난 번 대법원 판결이 제시되어(2012(후) 672 호, 2012 년 6 월 28 일 판결 선고), 부정 목적 유무에 대해 국외 기업 등이 보유한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권리자와 해당상표를 둘러싼 교섭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모방대상상표의 한국내 인지도나 해당국외 권리자에 의한 한국 국내 시장 진출계획 유무까지 가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p> <p>4.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내에서 알려진 정도나 한국내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도 중시하면서 부정 목적 유무를 판단할 경우, 당초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널리 대상으로 삼는 해당 조문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한 모방상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p>
개선요망	<p>1.부정한 목적의 유무는 소위 본인의 속마음의 문제이며 본인 이외의 사람은 좀처럼 알 수 없다. 따라서, 한국 특허청의 상표심사지침서에 의한 운용 대로 1) 타인의 상품 등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더라도 그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킬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나, 2)창작성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지극히 유사한 모방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상표법</p>
비 고	<p>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입법화되었으며(일본상표법 제 4 조 제 1 항 제 19 호), 또한 심사기준에서 1)출처의 혼동 우려가 없더라도 그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는 경우, 2)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조어 또는 구성상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와 동일 또는 지극히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p>

	상표출원에 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 명	30. 전통 제품·주류 등의 상표 보호 강화 【신규】
현황/문제점	<p>1. 지난 번에 니혼슈(일본 사케)의 일반명칭(아마구치(甘口), 가라구치(辛口), 죠센(上撰), 도쿠센(特撰) 기타 다수)가 한국의 니혼슈 수입업자에 의해 등록되고 해당 등록상표를 토대로 다른 니혼슈 수입업자에 대해 권리 침해를 경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니혼슈 관련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p> <p>2. 이와 같이 아마구치, 가라구치 등 한국인이라도 적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용어나 죠센, 토쿠센 등 니혼슈 업계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 일반명칭이 한국에서 상표 등록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특히, 전통 제품이나 주류는 해당 업계인들 사이에서 일반명칭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출원은 거절하도록 심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상표법</p>
비 고	일본의 상표 심사에 따르면 해당업계 거래자라면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법한 용어, 예를 들면 품질 등에 관한 일반 명칭은 거절되고 있다. (일본 상표법 3조 1항 3호 등)

건 명	31. 특허청 웹사이트 (KIPRIS)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 특허청 웹사이트 (KIPRIS)는 한글 공보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또한 영문검색을 한글로 자동번역하는 기능(Eng-Kor)을 탑재하고 있어서 영어 검색이 가능하다.</p> <p>2. 그러나 공보 전문에 대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 Eng-Kor 에 의한 자동번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할지 한글로 검색할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p> <p>3. 한국은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 4 위를 차지하는 등 공보 검색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도 증대되고 있는데, 영어와 한글의 검색 결과가 다르므로 한국 공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p>
개선요망	<p>1. 한글 공보에 대한 영어번역 확충과 Eng-Kor 기능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영어 검색과 한글 검색에서 같은 결과과 나오도록 개선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비 고	일본에서도 IPDL 에서 영어 검색이 가능하다.

건 명	32. 국경조치의 확대 【계속】
현황/문제점	<p>1. 최근,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의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기술·디자인 등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으로 인해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조품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관세청에 의한 국경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p> <p>2. 또한 모조품의 유통경로가 복잡해지고 있는 요즘, 중국 등에서 제조 발송된 모조품이 한국에서 환적되어 한국에서 수출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p> <p>3.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세관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한 단속 강화, 환적 물품, 수출품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p> <p>4. 또한 한국 세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단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소위 ‘진품감정 세미나’ 등의 판정 교육이 중요해 지고 있는데 해당 판정교육은 한국 국민을 모조품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공익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p>
개선요망	<p>1.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조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2013년 7월에 단속이 시작될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가급적 조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체제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p> <p>2. 또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의 조기 발효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으로의 수입뿐만 아니라 환적, 수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p> <p>3. 게다가 세관의 단속직원에 대한 ‘진품감정세미나’ 등의 판정 교육은 공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기업들에 한정하지 말고 한국 국민에게 모조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널리 개최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한국 관세법 235 조</p>
비 고	<p>일본에서는 상표권,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특허권, 의장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을 널리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 관세법</p>

	69 조의 11 제 9 항)
건 명	33.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철폐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문화 개방이 실시되어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p> <p>2. 그러나 여전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일본 예능프로나 드라마 등은 제한되고 있다.</p> <p>3. 한국의 콘텐츠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이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요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콘텐츠 규제를 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 콘텐츠에 대한 모방 피해를 조장하는 등,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p>
개선요망	1.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 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p>
비 고	

5. 개별요망사항

<p>건 명</p>	<p>34. 상법 개정(임원 등의 자기거래관련)의 강화방안 완화 【신규】</p>
<p>현황/문제점</p>	<p>개정 상법에 의하면 해외 모기업과 물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과 공정한 거래를 증빙하는 근거자료 및 의사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 거래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해서 그 빈도와 절차 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구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물품/용역의 거래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내에서 과도한 사무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p>
<p>개선요망</p>	<p>대상 범위의 거래가 많아질 것이므로 사전포괄 승인제도의 도입, 혹은 비상장사가 해당기업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외 모기업과의 물품/용역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 거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간소화하는 절차를 제정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련법령> 상법 제 398 조</p>
<p>비 고</p>	

건 명	35. 다수 공급자 계약의 관리기준에 관한 건 【신규】
현황/문제점	<p>1. 현재 조달청(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 1555호 2012.8.24) 제 21 조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제 22 조의 최고우대가격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가 조달청 계약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특정기간 동안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p> <p>2. 많은 기업들이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판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처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이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과의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모델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프로모션 (예: 대량 구매 시, 박리다매식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정부 공급 모델인 경우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인증비/서비스기준/설치기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소비모델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p>
개선요망	<p>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반 소비모델과 정부 공급모델을 일률적으로 비교해서 최저가격을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조달청은 정부 공급모델과 일반 소비모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또한 계약 당사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관련서류를 요청하고 조달청에 제출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조달청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국세청에 직접 요청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조달청</p> <p><관련법령> 다수 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 1555호 2012.8.24)</p>
비 고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규제가 없다.

건 명	36. 식품 수입에 관한 규제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건 【신규】
현황/문제점	<p>1. 현재 규제로는 소·치킨 엑기스를 포함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우병 발생국에서 소 엑기스를 사용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p> <p>또한 치킨 엑기스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고열과 장시간 멸균이 요구되나 일본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엄격하다. 한국 내 제조품의 동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입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생각된다.</p> <p>2. 한국에 식품을 수입할 경우 배합이나 제조 과정을 매우 자세히 요구받으며 실질적 노하우의 공개 압박을 받는다. 이는 간접적으로 노하우가 유출되고 모조품의 유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p>
개선요망	<p>1.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소·치킨 엑기스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해 주기 바란다.</p> <p>2. 통관 서류 간소화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식약청, 농림수산물식품성</p> <p><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 21 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 조</p>
비 고	

<p>건 명</p>	<p>37. 신약 가치 방안에 대한 건의 【신규】</p>
<p>현상 / 문제점</p>	<p>1. 개선점</p> <p>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 중에는 경제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제성평가 이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은 전혀 없다.</p> <p>현행 경제성평가 체제 하에서는 정량화할 수 없는 임상적 유용성 개선 및 기술적 진보에 대한 평가나 가산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2 년에 약가가 53.55%로 큰 폭으로 인하된 만큼 대체(비교)약제 가격도 함께 인하되었으며 신약은 보험시장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가격 수준이 떨어졌다.</p> <p>비교 약제의 산정 기준이 애매하여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약가를 등재할 때 이원화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HIRA)의 평가에서는 인정되던 비교 약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NHIC)과의 교섭에서는 대체약제로 간주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p> <p>약가 등재 절차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p> <p>2. 문제점</p> <p>R & D 장려를 전제로 해야 할 신약 가격을 R & D 장려가 완료된 특허만료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과 비교하는 것은 신약 개발 동기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p> <p>경제성이나 편이성에만 의거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되어 왔기에 비교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약의 약가 등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p> <p>HIRA 평가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NHIC 에서 약가 교섭을 통해 약가가 대폭 인하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교 약제에 비해 높은 약가가 인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p> <p>NHIC 에서의 교섭에서는 대체 약제 비용까지 고려되었으므로 제약회사는 신약 가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즈니스계획을 확립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p>

<p>개선요망</p>	<p>1. 임상적 유용성을 현저히 개선시킨 신약: HIRA 의 약제급부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가격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약가 교섭을 요망</p> <p>2. 일반적인 신약: 비교 약제에 대한 비열등성이 임상에서 입증된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약제급부평가위원회에서 대체(비교) 약제의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결정한 후 NHIC 협상을 면제함.</p> <p>3. 진료상 필수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A7 조정평균가로 결정</p> <p>① 대체 (비교) 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p> <p>②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p> <p>③ 희소질병 등 소수 환자집단에 사용되는 경우</p> <p>④ 생존기간을 상당히 연장하는 등 임상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입증된 경우</p> <p>4. 신약 대체(비교)약제의 선정 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등재한지 10 년이상 경과한 약제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만료 약제를 비교 약제로 선정하는 경우 특허만료 전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한다.</p> <p>5. HIRA 의 평가와 NHIC 교섭에서 같은 통계지표 및 기준을 적용하고 일관된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을 요망한다.</p>
<p>관계기관, 관련법령 등</p>	<p><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p> <p><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p> <p>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 2 조, 제 3 조, 제 4 조</p> <p>약가협상지침</p>
<p>비 고</p>	

<p>건 명</p>	<p>38.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계속】</p>
<p>현황 / 문제점</p>	<p>1.현황</p> <p>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 교섭 당시의 예상보다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다.</p> <p>1) 저가격 구매 인센티브제도: 요양 기관에 저가격 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할 경우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재는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p> <p>2)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재조정: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특허 만료 전의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인하한다.</p> <p>2. 문제점</p> <p>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상 사용량의 정의가 애매한 점, 사용범위 확대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 중복 인하에 의한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p> <p>② 저가격 구매 인센티브제도: 병원 내의 약품 코드를 유지하기 위한 과당경쟁에 의해 1 원에 낙찰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최근 저가격으로 낙찰된 도매업자에 의한 의약품 공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유통이 혼란스럽다.</p> <p>대형병원에만 적용된다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대형병원에 이익이 집중되며 병원 측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에 과도한 저가격구매를 요구함으로써 제약회사는 저가격 납품이나 약가 인하 등 이중, 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p> <p>③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재조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가 잔존하는 기간 중에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다른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특허 잔존기간 중에는 약가 인하가 유예되며 특허만료 시점에 특허만료에 의한 가격 인하분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인하 유예분을 모두 한꺼번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특허의약품 가격을 보호하고 있다.</p> <p>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53.55%로 인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최초 제네릭 등재 직전 가격으로 삼고 때문에 다른 사후관리정책과 충돌할 뿐 아니라 다른 약가 인하</p>

	<p>사유가 생길 경우 등재가격의 53.55%보다 저렴하게 약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약제에 따라서는 이중, 삼중의 가격인하 우려가 있다.</p> <p>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장시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이다.</p>
<p>개선요망</p>	<p>1.사용량-약가 연동제도</p> <p>① 사용량-약가 연동교섭제도의 유형 2 와 4 는 폐지하고 교섭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수정할 필요가 있다.</p> <p>② 제네릭 탑재에 의한 약가 인하 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 인하 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③ 공단에서 제시하는 제약회사의 정확한 청구량과 대체 약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섭에 필요한 시장 현황 등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p> <p>2.저가격 구매 인센티브 제도</p> <p>① 시장형 실거래가격제도는 보류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p> <p>② ‘유통정보센터’의 확립을 통해 전수 조사가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저가격으로 공급된 제품을 실거래가격 가중평균으로 인하한다.</p> <p>3.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재조정</p> <p>① ‘정상적인 유통을 어지럽히는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처럼 의약품의 유통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가격인하는 실시되어야 마땅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제도에서 특허의약품이 보호되도록 제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p> <p><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제 3 조, 제 8 조 약가협상지침</p>
<p>비 고</p>	

<p style="text-align: center;">건 명</p>	<p>39. 신약 약가 및 보험급여 등재 절차 단축화 【계속】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현황</p> <p>1. 신약의 약가 산정 방식</p> <p>일본에서는 약제 리스트 등재 신청을 할 때 비교의약품 선택의 근거, 해외에서의 약가, 희망하는 프리미엄과 그 산출근거, 예상환자수, 예상판매량을 제출하는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HIRA)에 제출하는 서류 요건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p> <p>그런데 HIRA 는 이와 함께 비용 대비 효과성 자료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IRA 에서의 평가 기간만 210 일, 약가 교섭에 60 일, 복지부 행정예고 60 일을 합하면 총 1 년이 걸리는데다 HIRA 의 평가에서 필요한 보충자료의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약가 신청부터 등재까지의 소요기간은 1 년 6 개월에 이른다.</p> <p>2. 사후관리제도</p> <p>일본에서 최근 20 년동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실세가격 가중평균치 조정폭 산정방식’은 1992 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요양기관 간의 거래가격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정부는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황가격을 산정한다.</p> <p>한국에서도 일본의 약가 인하 제도를 모방한 ‘시장형 실거래가격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2010 년 10 월부터 시행했으나 시행 1 년도 되지 않아 단 한번도 약가 조사나 약가 산정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보하고 등재가 완료된 의약품의 일괄 인하를 단행했다.</p> <p>문제점</p> <p>1.신약의 약가산정 방식</p> <p>이와 같이 신약의 등재까지 1 년이나 걸리는 한국의 등재 결정 절차는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체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의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한, 신약의 약가나 급여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신약 시판이 불투명해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p> <p>2. 사후관리제도</p>

	<p>일본에서도 보험재정을 위한 약제비용 절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p>
<p>개선요망</p>	<p>1.신약의 약가 산정 방식</p> <p>신약의 약가 및 급여 등재 절차를 단축하도록 행정절차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약등재기관을 단일화하거나 HIRA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2.사후관리제도</p> <p>약가 제도 도입 시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한 완충제 (buffer) 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p>
<p>비 고</p>	

<p>건 명</p>	<p>40.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필수 제출자유인 품목별 제조 및 품질평가자료(GMP 자료) 중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관한 건의사항 【신규】</p>
<p>현황/문제점</p>	<p>약사법 시행규칙 제 24 조 제 1 항 제 6 호등에 의해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목별 GMP 실시상황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품목에 관련된 입증자료로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세정 밸리데이션,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p> <p>1.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판매를 위한 실제 생산 스케줄의 연속 3 로트에 대해 실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KFDA)는 허가제출 시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관련자료를 허가 시점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직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한국의 이와 같은 규제 차이는 국내의 신약의 조소한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 환자가 신약을 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p> <p>또한 허가 제출 이전에 생산된 밸리데이션 실제 생산 로트는 유효기간 관계상 종종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p>2. 세정 밸리데이션: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KFDA 고시 제 2009-173 호)]제 6 조 제 1 항에 의하면 세정 밸리데이션은 연속 제조한 3 로트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동규정 제 6 조 5 항에 의하면 제조 공정 종료 후에 기계 및 설비 세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허용되는 기간(DHT)과 세정완료 상태가 유지 가능한 유효기간(CHAT)에 대한 사항은 세정 밸리데이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p> <p>이와는 다르게 유럽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CHAT 와 DHT 는 세정 밸리데이션의 대상이 아니므로 EU 기업은 보통 CHAT/DHT 평가를 연속 3 로트에 대해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관련법령에 적합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p>

<p>개선요망</p>	<p>1. 허가 신청 시에는 프로세스 및 세정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프로토콜만 제출하고 판매 직전에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p> <p>2. 세정 밸리데이션 중 CHT/DHT 평가를 1 회로 변경 또는 연속 3 로트가 아니라 3 회(비연속) 검증의 형태로 변경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 관련기관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p> <p>< 관계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3](보건복지부령 20 호)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173 호)</p>
<p>비 고</p>	<p>프로세스 밸리데이션과 세정 밸리데이션: GMP 조사 시에 확인되므로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밸리데이션 기준(후생노동성)에 의하면 3 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속성은 요구되지 않는다.</p>

6. 생활환경개선

<p>건 명</p>	<p>41. 교통 문제의 개선 및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가 【계속/내용변경】</p>
<p>현황/문제점</p>	<p>1.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2. 신호를 무시하는 자동차, 노상주차 단속, 전진할 수 없는데도 정체된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더욱 정체를 유발하는 차량 3.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급발진, 급정차 방지 4.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가</p>
<p>개선요망</p>	<p>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벌칙규정, 교통법규 준수, 교통도덕 향상을 지도할 것을 요망한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급정차, 급발진에 대해서는 노인, 어린이 등이 넘어질 위험성이 높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난폭한 운전을 삼가하는 등 운전기사의 도덕성에 대해 지도 및 교육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주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며 교통규칙의 준수, 단속 강화를 전제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p>
<p>비 고</p>	